남방은 쌀, 북방은 면… 절·천·노·월·상·민·소·휘 8대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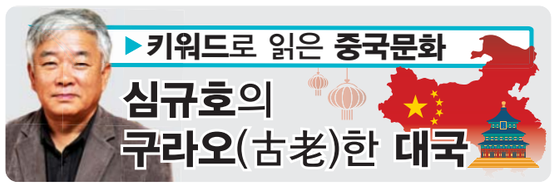

25. 음식남녀

음식남녀라고 하면 제일 먼저 타이완 영화 '음식남녀'(1994년, 감독 이안李安)가 떠오른다. 왕년에 요리사였던 홀아비 주씨朱氏는 장성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세 딸과 주말마다 모여 함께 식사한다. 그들은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아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당연히 서로 충돌하고, 각기 다른 길로 떠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다. 궁금하다. 이안 감독은 왜 '음식남녀'를 제목으로 썼을까?

음식남녀는 '식색食色'의 뜻이다. '맹자·고자告子'에서 고자는 "식욕과 색욕은 사람의 본성이다(食色, 性也)."라고 했다. 음식을 먹어야 살고, 남녀가 교접해야 종족을 이을 수 있다. 동식물 모두 '식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식과 색은 다른 욕구이지만 동일한 본성이다. 인간이 다른 동식물과 다른 점은 '식색'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동물에게 있는 발정기가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은 동물과 달리 토하고 다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래서 '예기·예운'에서 "음식, 남녀에는 사람의 '큰 욕구'가 존재한다(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❶ 게를 위주로 한 연회를 일컫는 해연(蟹宴) ❷ 강소성 남쪽 양등호에서 나오는 민물털게 다자셰 ❸얼굴에 마맛자국이 있는 마씨 할망의 마파두부 ❹ 소동파의 동파육 ❺ 송대 음식 풍류 ❻ 남미북면(南米北麵) ❼ 이안감독의 영화 '음식남녀'

> 삶고 익히는 '펑런'의 중국요리
> 마파두부·소동파 등 숱한 노력
> 문흘과 무흘의 양고기 굽는 법

오늘은 먹는 것부터 이야기하자. 사람은 누구나 먹고 마신다. 중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음식에 관한 한 참으로 유별나다. 그것이 문화를 이룬 것인지, 문화가 그것을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중국인의 음식문화가 독특한 것만은 분명하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필자는 이를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남방은 쌀, 북방은 면(南米北麵). 광활한 국토를 지녀 기후와 토양이 다르니 먹는 재료나 방식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북방은 강수량이 적고 건조하여 밭농사에 적합하니 밀, 고량, 좁쌀, 옥수수가 많이 나고 육고기도 많은데, 남방은 강수량이 많고 고온다습하여 논농사에 적합하니 쌀이 많고 물고기도 많다. 주식은 쌀밥과 면, 술도 황주와 백주로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국 요리는 지역에 따라 절浙(절강), 천川(사천), 노魯(산동), 월粵(광동), 상湘(호남), 민閩(복건), 소蘇(강소), 휘徽(안휘) 등 8대 요리로 구분한다. 여기에 북경과 상해를 별도로 넣기도 한다. 예로부터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며, 동쪽은 맵고 서쪽은 시다(南甛北鹹, 東辣西酸)"라고 했는데, 문인 양실추梁實秋는 "강소와 절강은 단 것을 좋아한다"를 덧붙였다. 북쪽이 짠 것은 알겠는데, 서쪽 사천에 맵디매운 훠궈(火鍋, 중국식 샤브샤브)가 있고, 호남에 매운 고추가 있는데 어찌 '산酸'이라 하였을까? 그럼 "사천 사람은 매운 것을 두려하지 않고, 귀주 사람들은 매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호남 사람들은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四川人不怕辣, 貴州人辣不怕, 湖南人怕不辣)"는 말은 뭔가? 각설하고 지역마다 먹는 것이 다르니 성격도 다르지 않을까? 당연하다. 이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둘째, 팽임烹飪과 요리料理. 우리는 일본어를 그대로 본 따 '요리'라는 말을 쓰지만 한어로 '랴오리料理'는 정리, 처리하다의 뜻이다. 대신 '펑런烹飪'이란 말을 쓴다. '烹'은 삶는다는 뜻이고, '飪'은 익힌다는 뜻이다. 음식을 조리한다는 것은 삶거나 익히는 일이다. 하지만 삶거나 익히는 것도 각기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돈은 약한 불에 장시간 삶는 것이고, 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반쯤 익으면 중불로 바꾸고 완전히 익으면 다시 약한 불로 끓이는 것이며, 민은 볶은 다음 육수를 붓고 뭉근 불로 끓이는 것이고, 작灼은 뜨거운 물에 데쳐내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는 불에 직접 올려 구운 것이고 훈燻은 연기를 쐬며 익히는 것이다. 많다. 많다는 것은 그 쪽에 조예가 있다는 뜻이고, 조예가 있다는 것은 애써 연구했다는 뜻인데, 얼굴에 마맛자국이 있는 마씨 할망(진씨陳氏)의 마파두부麻婆豆腐, 소동파蘇東坡의 동파육東坡肉에 이르기까지 남녀나 귀천을 불문하고 누군가 나름 노력한 까닭이다.

셋째, 문흘文吃과 무흘武吃. 먹는데 무슨 문무의 구별이 있는가? 무흘의 사전적 정의는 따로 양념을 하거나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료를 적당히 처리하여 먹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뜻도 있다. 예전 북경성에 양고기를 구워먹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식탁에 내놓으면 손님이 천천히 감상하면서 먹는 것이니, 이를 문흘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손님이 직접 화로 옆에서 젓가락으로 고개를 집어 구워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흘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먹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무흘은 당연히 백주白酒 몇 병쯤 마셔가며 먹어야 제 맛이니, 호방하되 원시적이다. 반면에 문흘을 하려면 음식에 따라 식기며 식탁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고, 시끌벅적한 소란 대신 황주黃酒 몇 잔과 우아한 담소가 곁들여야 할 것만 같다. 본시 중국인은 식사를 할 때도 나름의 '예'가 있었다. 공자가 말했다시피 "먹을 때나 잠잘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食不言寢不語)"고 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둥근 원탁에 앉는 방식이 따로 있고, 주문하거나 음식을 먹는 방법에도 특별히 유의했다.

> 2800년 전 게 요리 섭렵한 듯
> 송대 해보·명대 고흘에 소개
> 먹는 일에 귀천을 따질 일일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는 '수산삼진水産三珍'에 속하는 '팡셰(螃蟹)', 즉 '게'다. 아마도 세상에서 처음으로 게를 먹은 민족이 중국인인 듯한데, 서주西周 시대 '주례周禮'에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적어도 2700~2800년은 더 되지 않았나 싶다. 송대 사람 부굉傅肱이 아예 '해보蟹譜'라 하여 게의 계보까지 만든 것을 보면 어지간히 좋아하는 것 같다. 게는 바닷게도 있고, 민물이나 호수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강소성 남쪽 양등호陽澄湖에서 나오는 민물털게 다자셰大閘蟹가 유명한데, 10월과 11월 사이에 알이 꽉 차고 영양분이 많은지라 가장 맛이 있는 때이다. 명대 미식가들의 지침서라 할 만한 '고흘考吃'을 보면 게를 먹을 때 필요한 도구 여덟 가지가 나온다. 작은 망치, 쇠방망이, 펜치, 족집게, 작은 수저, 갈퀴(포크), 긁개, 바늘 등이 그것이다(이후에는 64개까지 늘어났다). 문인, 아사雅士들이 모여 즐기는 이른바 '해연蟹宴(게를 위주로 한 연회)'은 게와 술(황주, 백주), 그리고 국화 감상과 시 짓기(賦詩)까지 포함한 '문흘'의 대표격이다.

먹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다. "임금에게 백성이 하늘인 것처럼 일반백성들에겐 먹는 것이 곧 하늘이니(王以民爲天, 民以食爲天)"(사기·역생육가열전酈生陸賈列傳) 백성이야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리는 함포고복含哺鼓腹에 행복을 느끼기 마련이다. 예의네 도덕이네, 뭐가 그리 복잡하고 바쁜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며, 그저 잔뜩 먹어 즐겁고 배를 두드리며 노니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였다"(장자莊子·마제馬蹄) 그러나 먹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따라 크게 다르다. 황제에게 제공되는 어선御膳과 가난한 이가 허기를 달래는 일단사일표음一簞食一瓢飮(광주리의 밥 한 덩이와 표주박의 물 한 잔)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문흘과 무흘 역시 빈부귀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다.

<심규호·제주국제대 석좌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힐링투어: 아리산 삼림욕+머드온천
대만 남부 "가오슝" 4일
11월-12월 매주 화요일 출발
5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5,980적립

★착한패키지★ 오감만족/노쇼핑/노옵션
대만 남부 가오슝/타이난 4일
11월-12월 매주 화요일 출발
7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980적립

★착한패키지★ 완전정복/노쇼핑/노옵션
대만 남부 가오슝/타이난/컨딩/아리산 5일
11월-12월 매주 금요일 출발
8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8,980적립

모두의골프-제주직항
제주직항
파타야 3색골프
태국 파타야 골프 5일 54홀(1인1실)
11월 매일출발 (화요일제외) , 12월매일출발
1,190,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11,900적립
★1인1실★ 중상급 수준 매일 다른 골프장 18홀*3회/ 한국인 가이드

태국 파타야 세인트앤드류스 골프리조트 5일(108홀)
11월16부터 매일출발 (화요일제외) 12월-1월 매일출발
999,000원부터
태국인기 No.1/ 최대 54홀 코스
/ 한국인직원 상주/ 고객만족도 최고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대만 가오슝 골프 4일(5성급/54홀+@)
11/19, 26 12월 매주화요일출발
1,299,000원부터
골프#54홀#보너스18홀#5성급
투어마일리지 약 12,990적립

대만 가오슝 골프 5일(5성급/72홀+@)
11/22, 29 12월 매주금요일 출발
1,599,000원부터
#제주직항#가오슝#골프
#72홀#보너스27홀#5성급
투어마일리지 약 15,990적립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쇼킹M★ ㅁ제주출발ㅁ 상해정복
상해 완전정복 4일(특급호텔)
11/21, 22, 27, 28
493,2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4,932적립
#제주직항#상해#야경투어#주가각#쇼킹M#특가#4명출발

★4명출발★ 모두DIY
상해/주가각 or 디즈니랜드 5일(특급호텔)
11/21, 22, 27, 28
598,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5,987적립
#상해#노쇼핑
(일정선택제 : 주가각 또는 디즈니랜드 선택,
디즈니랜드 선택시 추가요금발생)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출발
$200상당 추천옵션 ALL포함
다낭/호이안/후에 5일
11/20, 12/11
1,191,200원
투어마일리지 약 11,912적립
ㅁ제주출발,부산경유ㅁ
#국내선포함#부산출발#노옵션#인기옵션포함#쇼핑2회
[노옵션/쇼핑2회/다낭5성동급]

스파3종몽땅포함
다낭+후에+호이안 5일(4성급)
11/20, 12/11
790,200원
투어마일리지 약 7,902적립
ㅁ제주출발,부산경유ㅁ #국내선포함#부산출발#스파

모두투어 전문판매대리점(가자항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 (부분별), 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준 (주)모두투어네트워크 대표: 우종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5층 사업자 등록번호: 202-81-452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중구 제03500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1983-04(서울특별시 중구) 영업보증보험: 일반여행업보증 15억 1천만원, 기획여행업보증 7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출발지: 제주공항 교통: 항공/전용차량 숙소: 입급호텔이상(상품 일정에 준함) 식사: 상품에 포함단, 자유일정시 불포함) 최소출발 기준인원: 있음(상품별 상이) 선택경비(선택관광: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detour.com]를 참고해주세요. 가이드 및 기사경비: 현지 별도 지불(일부상품제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 개발 기금, 여행자보험,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보단계: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여행금지 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 ·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라크(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예멘(2011년 6월 28일~2016년 7월 31일까지) [시리아(2011년 8월 20일~2016년 7월 31일까지)] [리비아(2014년 8월 4일~2016년 7월 31일까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2015년 12월 1일~2016년 7월 31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